
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11의2] <개정 2026. 6. 23.>

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(제42조제1항 관련)

1. 서울특별시, 전남광주통합특별시(동구·서구·남구·북구·광산구로 한정한다),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대구광역시(군위군은 제외한다),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
2. 경기도 중 수원시, 부천시, 과천시, 성남시, 광명시, 안양시, 의정부시, 안산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, 구리시, 남양주시

비고: 위 지역 중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이 허용된 화력발전소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.